

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·운용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: 2002. 10. 11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16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2 - 35 호
- 라. 상정일자 : 제9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(2002. 10. 21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임영만)

가. 제안이유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과
-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음

나. 주요골자

(1). 여성정책발전위원회

-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여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둠. (안 제3조)
-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(안 제5조)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의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.(안 제6조)
-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음.(안제12조)

## (2) 여성발전기금

-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기금 이자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함.(안 제14조)
-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함.(안제15조)
-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출납폐쇄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 (안 제17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하춘영)

-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와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된 경상남도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참고하여 동 조례안을 마련, 제정하는 것으로써
-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, 기능,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, 기금용도, 운용관리, 연간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 재 생 략

## 5. 토론요지 : 기 재 생 략

## 6. 수정안 요지 :

- 위원회의 당연직에 군의회의원1인을 포함토록 하며, 어감이 좋지 않은 남녀평등 부분을 여성지위향상으로 조문을 수정함
- 이현영 위원 :제5조 제2항 당연직으로 다음에 『군의회의원 1인』을 추가토록 하고,
- 신현기, 최용환, 신주범 위원 : 제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중 『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』을 『여성지위 향상과』로, 제15조 제1항 4호중 『남녀평등 실현』을 『여성지위 향상』으로 수정

## 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-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
-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, 기능,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, 기금용도, 운용관리, 연간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
-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

##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